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78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김미애 · 김은혜 · 김도읍
김기현 · 성일종 · 김소희
나경원 · 김상훈 · 서천호
김선교 · 박충권 · 김성원
안철수 · 김석기 · 김종양
배준영 · 강선영 · 김정재
이헌승 · 이상휘 · 엄태영
송석준 · 권영진 · 이양수
조경태 · 임이자 · 한지아
이종욱 · 조승환 · 조정훈
조배숙 · 박상웅 · 서지영
곽규택 · 박수영 · 우재준
김희정 · 백종현 의원
(38인)

제안이유

공익사업 및 도시정비·재개발 등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되어 조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이주 당시 기반시설·생활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채 형성된 경우가 많아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안전취약·빈집 증가·생활SOC 부족 등 복합 문제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주지 분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22개 도시 가운데 서울·성남·광주·부산·울산·창원·포항 등 7개 도시에서 총 47개 정책이주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부산이 18개 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주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전체 정책이주지의 약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책이주지가 특정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이 확인됨.

부산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이주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이 협소한 필지 구조, 부족한 기반시설, 노후주택 밀집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민간 중심의 자력 개발이나 개별 정비사업만으로는 정주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책이주지는 공익사업 및 공공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 및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 지정 기준, 정비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정책이주지가 일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수준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공정책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정책이주지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빈집·안전취약 등 긴급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순환이주 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운동의 기록·연구 및 기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음(안 제15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이주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또는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이 집단 이주하여 형성된 이주정착지·이주단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건설·공급한 주택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이주지환경개선사업”이란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 관련 사업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정비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관련 사업

바. 그 밖에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업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하여 적용한
다.

제4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은 다
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 참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기반으로 추진할 것
2. 안전·재난 취약요소의 개선을 우선할 것
3.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
4.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5. 역사적 경위 및 지역의 특성을 존중할 것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책이주지 주민의 주
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
가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
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요건·절차·권리관계 등을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이주지의 현황 및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거·생활환경·안전 분야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성과 분석·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17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1조에 따라 정책이주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다른 이주정책 관련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등의 실시예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이주지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이주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책이주지의 형성 경위 및 범위
2.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노후도 및 화재·급경사지 등 안전취약에 관한 사항
3. 정책이주지의 기반시설 현황
4. 정책이주지 내 빈집·공가·폐가 등 현황

5. 정책이주지 내 취약계층 분포 현황 및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6. 정책이주지 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주민 수요 조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이주지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책이주지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이주지 지정 기준에는 집단이주 기원, 기반시설 취약도, 정주환경 노후·불량 정도, 안전위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하려면 제17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정책이주지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정책이주지의 위치·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이주지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책이주지 관리대장 및 정보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이주지의 현황, 사업, 예산, 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대장(이하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의 서식, 세부적인 기재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책이주지 관리대장의 공개 범위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이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시기,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주지환경 개선사업
2. 정책이주지 내 시설 등의 화재·급경사지 등 안전취약 개선사업
3. 정책이주지 내 빈집·공가·폐가 등 정비 및 공공활용에 관한 사업
4. 주민 공동이용시설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5.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이주지 경관·커뮤니티 회복 사업
6. 순환이주 및 임시거처 제공 등 지역주민 이주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우선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 범위·방법 및 절차, 우선순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순환이주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책이주지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책이주지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책이주지를 순차적으로 개발(이하 “순환이주”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순환이주 방식으로 이주지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주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사업 등과의 연계·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업 절차의 합리적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이주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연계·활용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 ① 정책이주지 정책의 심의·조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이주지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이주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정책이주지 형성과 관련된 역사·기록·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의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경위 및 사회적 영향을 기록·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정리 및 간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정책이주가 사회적 갈등 또는 사건으로 표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제14조에 따른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록·연구의 방법 및 절차, 지원의 기준·절차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원의 확보 및 국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정책이주지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협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책이주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업의 연계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

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